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3 / 전송 733-9535-6

문서번호 시정 01226-*h3*
 시행일자 1992. 9.
 (경유) (제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
기획관리실장 전결		
시장개발담당관 <i>h3</i>	시장연구관 <i>h3</i>	
제도개선계장 <i>h3</i>	1992년 9월 22일	사건
기안	이 외 기안 <i>[Seal]</i>	합조

제목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계획

1.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'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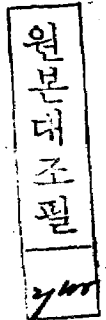
- 붙임 : 1.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계획 1부
 2.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 공고문(안)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홍보계획담당관
 발신 시장개발담당관
 제목 시보계제외회

1. '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모집계획을 시보를 통하여 공고코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공고문 1부.



서울특별시 장

1993년도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계획

1. 목적 및 근거

가. 목 적

- 일선 공무원의 유용한 현장경험 및 착상을 수렴 시정에 반영
- 직원 사기양양, 참여의식 고취 및 민주봉사행정 구현

나. 근 거

-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(훈령 제652호)

2. 착상의 모집

가. 모집기간 : '92. 9. 1 ~ '93. 7. 31

나. 착상자의 자격 및 착상대상

- 착상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산하의 모든공무원
- 착상대상
 - 시민복지와 생활편익증진
 -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
 -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
 -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발전
 - 기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다. 착상으로 볼 수 없는것

-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것
-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것
-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것

○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것.

○ 법령개정 사항이거나 기타 착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것

라. 제출방법 및 접수

○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문서합, 우편이용 착상서 1부 제출

○ 접 수

. 착상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교부

. 동일한 내용의 착상이 둘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착상이 우선함.

3. 심사 및 채택

가. 심사시기 : '93. 11월중

나. 심사절차

○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

○ 착상심사위원회(위원장 - 기획관리실장)에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

다. 심사기준

○ 창의성, 경제성, 능률성, 실용성 및 적용범위 계속성을 기준으로 심사

○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때에는 노력도와 완성도를 참작하여 채택 여부 결정

원본본대조필

4. 시 상

○ 채택자 전원 시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

금 상	은 상	동 상	장 려 상	노 령 상	참 여 상
250만원이상	150만원이상	50만원이상	30만원이상	10만원이상	5만원이상
500만원미만	250만원미만	150만원미만	50만원미만	30만원미만	20만원미만

5. 보 상

- 착상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가능함

6. 착상 준비자에 대한 지원

- 산하 각급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관한 착상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,
-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함.

7. 제안규정 적용

-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

8. 기 타

- 1993년도 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지침은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참조 또는 서울특별시청 시정개발담당관실(731-6153, 6553)에 문의하기 바람.

Handwritten mark

시사	1993. 9. 26	제 216 호
담당	원재재장	민주담당관
서	서	서

서울특별시공고 제 112-233 호

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공고(안)

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1993년도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2년 9월

서울특별시장

1. 목적 및 근거

가. 목 적

- 일선 공무원의 유용한 현장경험 및 착상을 수렴 시정에 반영
- 직원 사기양양, 참여의식 고취 및 민주봉사행정 구현

나. 근 거

-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(훈령 제652호)

2. 착상의 모집

가. 모집기간 : '92. 9. 1 ~ '93. 7. 31

나. 착상자의 자격 및 착상대상

- 착상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산하의 모든공무원
- 착상대상
 - . 시민복지와 생활편익증진
 - .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
 - .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
 - .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발전
 - . 기타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
Handwritten mark

다. 착상으로 볼 수 없는것

- 일반적으로 공지 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것
-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것
-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것
-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것.
- 법령개정 사항이거나 기타 착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것

라. 제출방법 및 접수

-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문서함, 우편이용 착상서 1부 제출
- 접 수
 - . 착상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교부
 - . 동일한 내용의 착상이 둘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착상이 우선함.

일본대조필

3. 심사 및 채택

가. 심사시기 : '93. 11월중

나. 심사절차

-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
- 착상심사위원회(위원장 - 기획관리실장)에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

다. 심사기준

- 창의성, 경제성, 능률성, 실용성 및 적용범위 계속성을 기준으로 심사

-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도와 완성도를 참작하여 채택 여부 결정

4. 시 상

- 채택자 전원 시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

금 상	은 상	동 상	장 려 상	노 령 상	참 여 상
250만원이상 500만원미만	150만원이상 250만원미만	50만원이상 150만원미만	30만원이상 50만원미만	10만원이상 30만원미만	5만원이상 20만원미만

5. 보 상

- 착상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이 가능함

6. 착상 준비자에 대한 지원

- 산하 각급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관한 착상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,
-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.

7. 제안규정 적용

-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

8. 기 타

- 1993년도 시정발전착상제도 운영지침은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정발전착상제도운영규정 참조 또는 서울특별시청 시정개발담당관실(731-6153,6553)에 문의하기 바람.